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8일 16시 57분



목차

목차	2
공지사항	3
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“착한 신고” 스마트폰용 앱(App)	3

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“착한 신고” 스마트폰용 앱(App)

2015.02.12 조회수 222 등록자 김유민

아동복지법 제22조(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)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‘착한신고’ 스마트폰용 앱(APP)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※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“착한 신고” 스마트폰용 앱(App) ※

아동학대의 범위, 징후, 신고 방법, 아동학대예방 교육자료 및 가까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아이폰/IOS) : App Store에서 “아동학대” 검색 후 다운로드

(삼성,LG/안드로이드) : Play 스토어에서 “아동학대” 검색 후 다운로드

목록

이전글

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"아빠와 함께 케이크 &...

다음글

201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바우처) 시행안..

Yeosu Web Contents

